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41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7조, 제8조)
-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9조)
-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안 제11조)
-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회), 제22조의2제4항(공공건축 건축계획의 수행 등),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계획의 수행 등), 제2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라. 기타

- 입법예고(2020. 9. 4. ~ 9.24.)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5]
- 관계법규 [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 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 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각급 기관의 장” 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

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 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

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④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9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는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 기획의 수행 등),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등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 단,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은 관련내용 기준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연평균 비용51,480천원)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고)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행정7급 황선영 (02-6973-9863)

【별첨 1】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전검토 업무 수행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1) 관련법에 따라 건축기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의무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전검토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 및 사업추진경비 필요
-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사업추진경비 필요

나. 비용추계의 결과

- 1) 총 비용은 5년간 **257,4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51,48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수당	35,520	35,520	35,520	35,520	35,520	35,520	177,60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공공건축(지원센터 및)심의위원회사업 추진경비	3,360	3,360	3,360	3,360	3,360	3,360	16,800
	소계(b)	51,480	51,480	51,480	51,480	51,480	51,480	257,400
□ 총 비용(b-a)		51,480	51,480	51,480	51,480	51,480	51,480	257,400

2) 세부추계내역

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대상: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10명
- 내용: 건축기획 사전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및 사업추진경비
 - ※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1일 금369,831원)
 -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소요예산: 금35,520,000원(금삼천오백오십이만원)

- 산출내역

- 민간자문단 수당: 370,000원 (1일 단가) × 4건 × 2일 × 12개월
- ※ 2017 ~ 2019 설계공모 진행 건 평균 건 수 30건
- ※ 건 당 민간전문가 1명이 4회 근무할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대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 수당 및 사업추진경비
 -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참석수당 2시간이상 150,000원)
- 소요예산: 금15,960,000원(금일천오백구십육만원)
- 산출내역
 - 심의위원회 수당: 1일 단가(150,000원) × 7명 × 12개월
 - 사업추진경비: 1식(20,000원) × 14명 × 12개월

구분		산출기초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수당	$370,000\text{원} \times 4\text{건} \times 2\text{일} \times 12\text{개월} = 35,520\text{천원}$
	소계(a)	35,520천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50,000\text{원} \times 7\text{명} \times 12\text{개월} = 12,600\text{천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업추진경비	$20,000\text{원} \times 14\text{명} \times 12\text{개월} = 3,360\text{천원}$
	소계(b)	15,960천원
□ 총 비용(a+b)		51,480천원

【별첨 2】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학교지원과)	① 공공건축 사전검토 요청 시기 수정 (조례 제정안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요청 시기를 투자심사 이전으로 정하였으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검토 절차를 반축해야 함에 따라 사업 지연 우려. 사전검토 요청시기를 타 지자체(서울시, 부산시)와 같이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하여 사업추진의 유연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설계용역 입찰공고 이전 공공건축사 전검토 요청 시, 학교신설의 경우 사업추진일정 부족으로 투자심사 이전 공공건축사전검토 실시로 최소 사업기간 확보 - 사전기획을 통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 대응 강화로 사업계획의 변경 최소화
(감사관)	② 제정안 제1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설치근거와 역할만 규정하였을 뿐, 위원회 자격 및 구성방법과 의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 및 구성 방법,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임규칙 등(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4항)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또한 근거 규정에 의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시행중에 있음[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14호, 2020. 7.30., 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발췌 참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정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무부서	교육시설안전과	통보(조치)일	2020.9.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p>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수행)</p>	<p>- 동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입법 타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만족함</p> <p>- 다만, 안 제1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설치근거와 역할만 규정하였을 뿐, 위원의 자격 및 구성방법과 의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p> <p>⇒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의결 방법에 대한 규정을 통해 처리과정과 업무의 책임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부패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권고” 함</p>		<p>개선권고</p>

【별첨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28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명	황선영	전화번호	02-6983-98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앞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및 균형참여 반영, 성별통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항목별 포인트를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p> <p>소관 부서가 미리 점검한 바와 같이 조례안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9월 0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신지은/02-399-3910)</p> <p>교육시설안전과장 귀하</p>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정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	직급	행정7급	성명	황선영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전체	<p>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기획, 수행 및 품격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함</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해당 없음					

관계법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9.12.19.] [법률 제15994호, 일부개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2제4항(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대통령령 제29490호, 일부개정]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제2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기본법」

[시행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04.30.] [대통령령제30653호, 일부개정]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

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10.16.]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